

1. 개정이유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하여 비위유형을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비위유형 신설 및 성비위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및 징계감경 제한(안 별표 일부개정 및 제4조제2항 제15호 신설)
- 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관련 성폭력범죄’ 비위 신설 및 성비위 징계기준 정비(안 별표 일부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22. 9. 19.~'22. 10. 31.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별표 제1호거목을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	-------	-------	-------

별표 제7호사목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봉

별표 제7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통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	----	-------	----------	----

별표 제7호차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관련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	----	-------	----------	----

별표 비고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호거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를 말한다.

9. 제7호차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관련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교육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생략)	제4조(징계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u><신설></u>	<u>15.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